

마)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본 예규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에 대하여 규정 제11조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바)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말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7)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가) 말소 방법

(1) 규정 제9조제3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 카드의 당해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함.

(예시1) “2008. 1. 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예시2) “대통령특별사면(2008. 8. 15.)에 의거 사면”

(예시3)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1995. 12. 2.)에 의거 사면”

(2) 규정 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함.

(3) 다만, 법 제8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규정 제9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재징계된 처분은 위 (1)의 방법에 따라 말소함

※ 규정 제9조 제3항 단서조항의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라 함은 소청결정이나 법원판결로 원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법 제83조의2 제3항의 재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나) 말소 기한

(1)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서식VII-26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서식VII-27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정리

말소권자는 [서식VII-28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